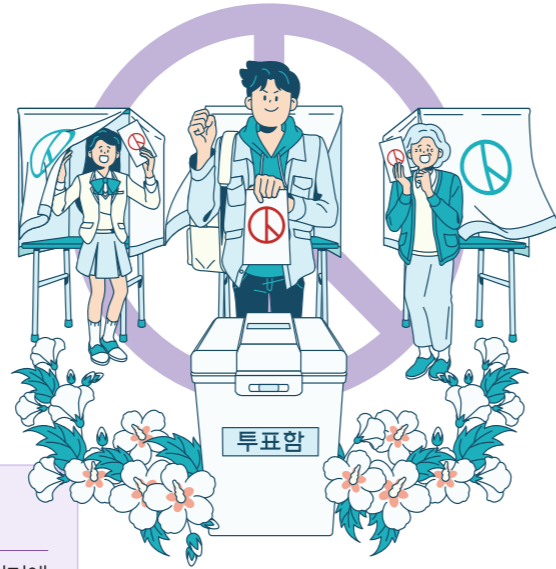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달라지는 점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선 달라지는 점들이 많은데 주의점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정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학교 안 여러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18세(2002. 4. 16 이전 출생)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두근두근 첫 선거를 앞둔 학교 안 유권자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Q&A로 소개한다.

### 선거권 연령 하향 Q&A

#### Q. 선거에 대한 의견을 주변에 말해도 되나요?

학생들끼리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Q.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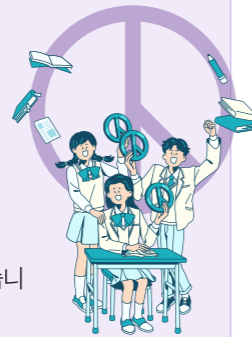
선거운동 기간(4. 2~4. 14)에는 다수 학생 대상이 아닌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또는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단 문자메시지는 한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당시에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Q. 18세 선거권자 선거운동 방법은 뭐가 있나요?

선거사무관계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고,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선거사무장 등으로부터 지정돼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Q. 18세 선거권자도 정당 가입이 가능한가요?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직에도 취임할 수 있습니다.



### 필독! 주의사항

#### 선거여론조사를 조심하세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사람도 처벌받지만, 전달받은 왜곡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옮겨 공표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SNS에 공표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게 조작된 것일 수 있으니 공유할 때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학교 안 선거 주의사항

학교 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 및 첩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학교 내 2개 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행위와 학생 단체가 그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SNS에서도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의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비례대표제, 무엇이 바뀌었을까?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방식이 기존 병립형 47석에서 준연동형 30석+병립형 17석으로 바뀌었다.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에 1표 정당(비례)에 1표 투표하는 방식(1인 2표)은 변화가 없다. ※ 국회의원 정수는 총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 기존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독립적으로 배분)

| 정당 | 지역구 당선자수 (①) | 비례대표         |              | 국회의원 총 의석수 (①+④) |
|----|--------------|--------------|--------------|------------------|
|    |              | 정당별 득표비율 (②) | 비례대표 총의석 (③) |                  |
| A  | 18           | 8%           | × 47         | 3                |
| B  | 10           | 12%          |              | 5                |
| ∴  | ∴            | ∴            |              | ∴                |
| 합계 | 253          |              |              | 47               |

※ 병립형 산출식: 비례대표 총의석 × 정당별 득표비율

(예시: A정당 득표비율 8%인 경우)

비례 A(정당)에 1표를 투표하면

비례

47석(비례대표 총의석수) × 8%(A 정당 득표비율)

18석 (A당 지역구 당선자수)

3석

18(지역구) + 3(병립형비례) = 21석

###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비율 연동)

| 정당 | 지역구 당선자수 (①) | 정당별 득표비율 (②) | 비례대표             |            | 준연동형 의석수 (⑥=⑤/2) | 병립형 의석수 (⑦) | 국회의원 총 의석수 (①+⑥+⑦) |             |
|----|--------------|--------------|------------------|------------|------------------|-------------|--------------------|-------------|
|    |              |              | 의석할당 정당 총의석수 (③) | 소계 (④=②×③) |                  |             |                    | 의석수 (⑤=④-①) |
| A  | 18           | 8%           | × 300            | 24         | 6                | 3           | 1                  | 22          |
| B  | 10           | 12%          |                  | 36         | 26               | 13          | 2                  | 25          |
| ∴  | ∴            | ∴            |                  | ∴          | ∴                | ∴           | ∴                  | ∴           |
| 합계 | 253          |              |                  |            |                  | 30          | 17                 | 300         |

※ 준연동형 산출식: (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 × 정당별 득표비율 - 지역구 당선자수) ÷ 2

1.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 배분시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없는 것으로 가점  
2. 각 정당별 연동 배분 의석수 합계 산출시 조정의석수 및 간여배분의석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예시: A정당 득표비율 8%인 경우)

비례 A(정당)에 1표를 투표하면

준연동형

비례

병립형

300석(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 × 8%(A정당 득표비율) = 24석

17석(병립형 비례대표 총의석수) × 8%(A정당 득표비율)

연동

24석 - 18석 (A당 지역구 당선자수) = 6석

연동

6석 × 50%

3석

18(지역구) + 3(준연동형 비례) + 1(병립형 비례) = 22석